

주요 수당 부당지급 및 소급지급 주요사유

○ 가족수당

구분	부당지급	소계	소급지급
사유①	부양가족과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또는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(ex: 부양가족의 주소지 전출, 사망, 자녀의 연령도과,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였으나 지급 등)	사유①	'08년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 가능함에도 미지급
사유②	부양가족과 동일주소이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	사유②	'07년부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지급인원 제한이 해제되어 지급 가능함에도 미지급한 경우
사유③	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	사유③	본래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었음에도 미신고한 경우
사유④	기타(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지급 등)	사유④	기타(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지급 등)

○ 자녀학비보조수당(※ 소급지급사유는 부당지급사유별로 반대될 경우 기재)

구분	부당지급
사유①	퇴학,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
사유②	부부공무원의 경우,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지급
사유③	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
사유④	기타(면직된 공무원에게 전액 지급, 급여담당자 전산착오지급, 실제 납부액이 아닌 지급상한액으로 지급 등)

○ 육아휴직수당(※ 소급지급사유는 부당지급사유별로 반대될 경우 기재)

구분	부당지급
사유①	30일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
사유②	지급기간 1년 이내를 초과하여 지급
사유③	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총지급액의 15% 미지급(일시불)
사유④	휴가 또는 휴직 중 소속이 바뀌었을 시 회계처리 착오(지급, 환수 및 일할계산)

○ 초과근무수당

구분	부당지급
사유①	연가, 교육, 출장, 당직근무 중 초과근무체크
사유②	대리로 초과근무체크
사유③	담당자 착오지급
사유④	기타(사유기재)